

의안번호	2207974
의 퇴 인	권칠승 의원
회 답 일	2025.3.24.
추계번호	25A0764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의20 (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지원)	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성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.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 지원 2. 고성장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. 고성장벤처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4. 그 밖에 고성장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6조의20 (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고성장벤처기업에 융자 및 투자, 연구개발, 수출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경우, 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 등에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
 -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(5231-301)을 통해 벤처기업일자리 및 인프라 지원, 여성 벤처활성화, 소셜벤처육성, 아기유니콘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예산현황은 [표1]과 같음

[표1] 2025년도 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(5231-301) 사업예산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 (- 내역사업명)	2023년 결산	2024년 예산	2025년 예산안
벤처기업경쟁력강화사업	6,796	6,179	28,282
- 벤처기업일자리지원	1,370	1,970	1,970
- 벤처기업인프라지원	2,224	3,009	2,812
- 여성벤처활성화	1,200	1,200	1,500
- 소셜벤처육성	2,002	-	-
- 아기유니콘육성	-	-	22,000

자료: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(세부사업설명자료)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
 - 현재,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투자실적 또는 기업가치가 높은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개척자금 및 보증, 글로벌 컨설팅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
-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통계 자료가 미비하고, 현 시점에서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, 벤처기업에 한정된 고성장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현재 미비함
 - 다만, 통계청의 기업생멸통계에는 벤처 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성장기업 통계는 존재함
 - '23년 기준 전체 활동 기업 약 756만개 중 고성장기업은 5,681개사로 전체 활동 기업 대비 0.075%에 해당함('24.12. 통계청 기업생멸통계자료)
 - 개정안의 융자 및 투자, 연구개발, 수출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요건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